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
----------	-----

제출년월일 1997. 4. .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조례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과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 이를 개선·보완코자 함.

□ 주요 골자

-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일원화 시킴.
- 융자지원대상자선정, 융자금상환연기등 중요안전처리를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안전심의·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
- 융자지원대상을 가구, 마을에서 단체를 추가시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 융자지원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을 기할수 있도록 함.
-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부 이율에 대하여 상향 조정
 - 융자금 : 마을 2,500만원 → 5,000만원 (단체 포함)
 - 가구 500만원 → 1,000만원
 - 특화사업(읍면당) 6,000만원 → 1억원
 - 농고장학생 100만원 → 500만원
 - 이 율 : 3퍼센트 및 무이자 → 5퍼센트 (농고장학생은 3퍼센트)

- 융자금의 대부 상환기간 일원화
 - 1년거치 2년 / 5년거치 3년 → 2년거치 3년
-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시 의회의 의결사항을 운영위원회 의결로 함.
- “지방이주도시영세민특별지원자금융자특례” 조항을 삭제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어가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용자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 2 장 지원사업 운영

제 3 조 (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 선정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용자금 상환연기 등 중요안건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새마을
소득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을 둔다.

③ 안전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참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용자대상사업) 용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 소득사업
 - 가. 경제 작물의 생산
 - 나. 축산 사업
 - 다. 수산 사업
 - 라. 기타 단기성 생산 소득사업
2. 생산기반 사업
 - 가. 농지조성 사업(개답등)

제 5 조 (융자대상) ①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 마을, 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가구
2. 적정규모의 기금이 있거나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
3.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중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마을 및 단체
4.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마을 및 단체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규모 이율 등을 별도로 정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의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으로서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자(1인당 500만원이하)
2.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1읍면 1특화사업 참여마을 및 단체 (1읍면당 1억원이하)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가구, 마을, 단체에는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 마을 및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수 있다.

제 6 조 (용자지원 우선 순위) ①제5조 규정에 의하여 용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매우 빈약한 영세농어가 및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2.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3. 제5조 2항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용자지원하는 가구, 마을 및 단체
4.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마을 및 단체
5.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

②시장은 제5조 및 6조1항 규정에 의한 용자지원대상가구, 마을 및 단체를 선정할때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키 위하여 용자금지원 신청자에게 관련증빙자료를 제출케 할수 있다.

제 7 조 (용자한도 및 이율등) ①용자 한도액은 마을 및 단체당 5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2항의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5조 2항 1호의 특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년 3퍼센트로 한다.

③ 용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으로 한다.

제 8 조 (용자금의 대부신청) ①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 마을 및 단체 (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통,리 개발위원중에서 3명이상 (가구의 경우는 일반농가 2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신청 마을, 단체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금의 대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9 조 (융자금결정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결정사항 및 조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가구, 마을 및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융자금 상환

제 11 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년1회 균분 상환한다.

제 12 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거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하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에 그 동안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한 체납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 7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자금의 예탁 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 14 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 융자 할 수 없다.

제 15 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의 대부분을 받은 가구 (마을 단체포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자금을 타목적으로 유용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 4 장 특별회계

제 16 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7 조 (세입·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기금과 제2조2항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 18 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 19 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0 조 (채납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지방세 채납 징수의 예에 따라 행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치 아니 할 때
2. 제 14조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이를 완납치 아니 할 때

제 21 조 (감면조치) 자금의 용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 22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용자받았거나 상환 중인 것은 이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조례 시행이전 용자된 자금의 상환조건, 가산금, 이율 등은 용자 당시 조례에 의한다.

(별지서식)

새마을소득사업자금대부신청서

1. 마 을 명 : 시 읍·면·동 리 마을
2. 대 부 신 청 금 액 :
3. 대 부 신 청 사 유 :
4. 상환 방법 및 기간 :
5. 대부신청 사업계획 :
-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내 용 :
- 다. 사 업 장 위 치 : 라. 사 업 의 필 요 성 :
- 마. 사 업 실 시 기 간 : 바. 재 원 계 획 :

(단위: 원)

총 사 업 비	용 자	자 부 금	자 부 담 방 법	비 고

※ 사업비 산출명세 : 별 첨

사. 사업 수지 예산 : (단위 : 원)

총 수 익	총 비 용	순 수 익	비 고

※ 사업수지예산명세 : 별 첨

6. 마 을 규 약 :
-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새마을소득사업의 용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 ○ 리 대 표 자
 성 명 인

위 신청인이 귀시로부터 차용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 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책임을 지겠음을 확약 합니다.

 199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1996. 3. 1] 조례 제63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 2 장 금 고 운 영

제 3 조 (융자대상사업) 유야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나. 잠 업 : 잠실건립, 상전조성

다. 축 산 :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등

라. 수 산 : 양어장, 양식영농, 수산시설등

마. 양 묘

바. 꿀 벌

사.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농지조성(개답)

제 4 조 (용자대상) ①용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②시장이 제1항의 용자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용자한도 및 이율) ①용자한도액은 마을당 2,500만원, 가구당 500만원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용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3퍼센트이내로 한다.

제 6 조 (대부기간) ①용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거치 2년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거치 3년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년 내지 5년거치 3년이내 상환

②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

제 7 조 (용자금 대부신청) ①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통·리개발위원중에서 5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의 연대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조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융자금의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금의 대출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8 조 (융자금의 상환) ①이 융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 하게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 9 조 (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특별지원사업

제 10 조 (융자대상) ①융자대상마을 또는 가구는 시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융자 받은 마을 제외)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파주시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저소득마을 및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4.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②시장이 사업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파주시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다만, 마을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 한다.

제 12 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로 한다.

②용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 13 조 (대부기간) 용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4 조 (용자금 대부신청) ①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은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가구의 경우 개인명의)의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본 용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 15 조 (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의 상환은 년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제 16 조 (용자금의 상환기간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지회와 협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17 조 (가산금 및 독촉) ①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시장은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후 각각 10일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특례) ①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②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주민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용자한다.
- ④제3항에 의한 용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용자에 따른 용자기간, 용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9 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용자특례) ①농업계 고등학교에 2년제 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자금을 용자할 수 있다.

- 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훈련 제941호)에 의한다.

제 20 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용자특례) ①화훼기술 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고등학교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 배양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용자할 수 있다.

- ②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훈련 제777호)에 의한다.

제 21 조 (1면 1특화사업자금 용자특례) ①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1특화사업자금을 용자할 수 있다.

- ②1면 1특화사업의 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한도액은 1면당 6,000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 3퍼센트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2 조 (감독) 시장은 자금의 용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파주시지회와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 23 조 (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시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24 조 (세입·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사업자금과 상환금, 일반회계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 25 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 25 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7 조 (융자금의 대출) 시장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중복용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 29 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자금을 용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 30 조 (채납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세 채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 31 조 (감면조치) 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 32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용자받았거나 상환중인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